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554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9.01.29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건설안전본부장	사장
			01/29
전철준	정우철	임창수	김경호
협 조	팀장 이두영		
감 사	감사실 감사필		

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연장 계획(안)

2019.1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시설안전팀

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연장 계획(안)

차기 **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 용역** 업체 선정에 필요한 승강기 사용 주체와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발생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가 지연되는 바, 중단없는 설비 관리를 위해 금월부로 과업 종료되는 **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**의 계약 기간 연장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

I 현황

□ 용역 개요

- 형태 : 현장 상주형 승강기유지관리 업체 위탁 관리
- 계약상대자 : (주)대명엘리베이터, 소재지 : 광주광역시
- 계약 기간 : 2016.1.1~2019.1.31(37개월)
- 계약 금액 : ₩818,929,519[원, VAT 포함]
 - 월간 용역비 : ₩26,529천원(부가세 포함)
- 주요 과업 내용 : 시장내 승강설비 72[대] 유지 보수
 - 법정 자체 검사, 고장 민원 처리, 예방 정비, 간단 보수 등
- 인력 현황 : 총 6명(책임자1, 작업자 5명)
 - 근무 체계 : 24시간 상주(주간 4명, 야간 1명, 비번 1명)
 - ※ 비상 상황시 조치 시간 : 상주(10분), 비상주(60분 이상)
 - 상주 장소 : 채소1동 2층 통신실

II

추진 경위 및 필요성

□ 추진 경과

○ '19.12월 : 차기 용역 설계 완료

- 설계 결과 : 현장 상주형, 6명(주간5, 비번1)

○ '19.1월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

- 기존 용역 대비 부담 비용 39% 증가

※ 4년전 대비 인건비 19% 상승, 근무시간 상승 등의 영향

○ '19.1.31 “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” 과업 종료

□ 추진 경위

○ 차기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설비 관리 업무 공백 발생

-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“자체 점검” 의무 이행 필요
- 설 명절 도래에 따른 집중적인 설비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시점
- 성수기 승객 간힘 사고 등의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

➔ **관리 주체로서의 중단없는 설비관리 필요**

○ 차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유통인 협의 필요

-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신규 용역 비용 부담 증가(기존 대비 39%)함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상황 공유
- 입주자 관리비에 민감한 주요 상인 단체 의견 수렴

☞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락물에 비해 사용자가 적어 상대적 비용 부담이 큰 도매권역 입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며, 또한, 입주자 관리비에 대한 민감한 가락물 입주자 단체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

➔ 신규 용역 추진에 따른 유통인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차기 업체 선정시까지 업무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유지보수 업체와 **계약 기간 연장**을 추진코자함

Ⅲ 계약 변경 시행 계획

○ 계약 연장 기간 : 2개월(과업 수행기간 : 2019.3.31까지)

당 초	변 경	증 감
2016.1.1~2019.1.31	2016.1.1~2019.3.31	증) 2개월

○ 변경 조건 : 계약 내역서 계상 금액 조정없이 계약 기간 연장

- 연장 계약 요구 근거 : 과업내용서 “12조 12.6항¹⁾”

- 계약상대자 협의 결과 : 수용

- 변경 후 계약 금액 : ₩871,986,917원(부가세 포함)

당 초	변 경	증 감	비 고
818,929,519	871,986,917	증) 53,057,398	과업 내용 변경 없음

Ⅳ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

○ 금회 방침 후 계약 변경 시행

- 계약명 : 가락시장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

- 계약상대자 : (주)대명엘리베이터

- 계약금액 : ₩871,986,917원(부가세 포함)

- 계약 기간 : 2016.1.1 ~ 2019.3.31

첨부 : 1. 계약내역서 1부.

2. 계약 변경 합의서 1부.

1)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2회까지 상호 협의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